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 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을 마련하며,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증과 강사자격증, 그리고 기능검정원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며,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률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24. 5. 29. ~ 7. 8. 입법예고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중 “법 제106조제4항 또는 법 제107조제4항”을 “법 제106

조제5항 또는 법 제10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8 제2호4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때	제93조	○면허증 소지자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때 ○면허 취득자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때
---	---	------	--

별표 28 제4호가목 일련번호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약취·유인·감금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

한 경우에 한정한다)
·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10조의 죄

별표 28 제4호나목 일련번호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강간·강제추행
· 약취·유인·감금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의 죄

별표 34 I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06조제4항제1호”를

“법 제106조제5항제1호”로 하고, “법 제107조제4항제1호”를 “법 제107

조제5항제1호”로 한다.

별표 34 Ⅱ 제1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6조제4항제1호”를 “제106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Ⅱ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제1항·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별표 34 Ⅱ 제2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6조제4항제2호”를 “제106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Ⅱ 제3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6조제4항제3호”를 “제106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Ⅱ 제4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6조제4항제4호”를 “제106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Ⅱ 제5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6조제4항제5호”를 “제106조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Ⅱ 제6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6조제4항제6호”를 “제106조제5항제6호”로 하고, 같은 Ⅱ 제7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6조제4항제7호”를 “제106조제5항제7호”

로 하며, 같은 Ⅱ 제8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6조제4항제8호”를 “제106조제5항제8호”로 하고, 같은 표 Ⅲ 제1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7조제4항제1호”를 “제107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Ⅲ 제2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7조제4항제2호”를 “제107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Ⅲ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별표 34 Ⅲ 제3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7조제4항제3호”를 “제107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Ⅲ 제4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7조제4항제4호”를 “제107조제5항제4호”로 하며, 같은 Ⅲ 제5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7조제4항제5호”를 “제107조제5항제5호”로 하고, 같은 Ⅲ 제6호란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07조제4항제6호”를 “제107조제5항제6호”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 ①법 제106조제4항 또는 법 제107조 제4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 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 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 ③ (생략)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 ①--- -----제5항----- 제5항-----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제1항, 별표 28 제2호4목 개정규정 및 별표 34 I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34 II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별표 34 III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별표 35 II 교육방법의 세부 내용란 제11호, 별지 제13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